인천시설공단 공고 제2026-161호

송도 1·3공동구 유도배수판 설치 공사

수의견적 제출 안내공고

인천시설공단은 **청렴 계약 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투명성. 공정성을 제고**하고 **부조리 척결 및 깨끗한 공직 풍토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계약이행 완료 이후도 포함)에서 우리 공단 **직원의 공직자 비리 및 하도급 부조리 등 공정거래를 해치는 부패행위에 대해서 공단 홈페이지(http://www.insiseol.or.kr) 고객마당 내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및 청렴상담센터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인천시설공단 임·직원 사칭 사기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근 인천시설공단 임·직원을 사칭하여 계약업체에 입금 또는 납품을 요구하는 등 사기 시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의심되는 연락을 받았을 경우 **공단 담당자에게 내선전화하여 사실 여부를 확인**하시고, **사칭 피해를 입었을 경우 경찰(☏112)에 즉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1. 견적(이하 입찰이라고 함)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송도 1·3공동구 유도배수판 설치 공사

나. 위　　치: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다.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0일 이내

라. 공사내용

구역명	물량(개소)			면적(㎡)
	계	설비구	전력구	
1구역	5	2	3	11.80
4구역	3	3	-	8.04
6구역	3	3	-	5.88
계	11	8	3	25.72

【공사물량은 변동가능 / 실제작업물량에 따라 정산】

마. 공사개요: 자세한 사항은 시방서, 물량내역서 참조

바. 기초금액: 금34,044,000원(금삼천사백사만사천원)

(추정가격: 금30,949,091원, 부가가치세: 금3,094,909원)

사. 본 공사는

(1)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시** 및 **상생결제 시스템** 대상 공사

(2)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금액,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은** 조정없이 반영하고 관련 기준에 의하여 **사후정산**

(3) 본 공사는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이 필요치 않으며, 공사 특성상 긴급 및 수시적, 다발적인 소규모 공사로 시공의 신속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해 풍부한 시공경험이 요구됨에 따라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공사입니다.**

2. 입찰 및 개찰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 제한경쟁(지역제한), 상호시장 진출 허용하지 않는 공사, 상생결제 시스템 대상 공사, 전자입찰방식**으로 진행합니다.

나. 입찰서제출기간: 2026. 9. 11.(금) 20:00 ~ 2026. 9. 17.(목) 10:00

다. 개 찰 일 시: 2026. 9. 17.(목) 11:00

라. 개 찰 장 소: 인천시설공단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등 발생 시 개찰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 까지 관할구역(인천광역시) 안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이 있어야 한다.(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증이나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서류의 사업장 소재지를 말한다)**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주력분야: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본 공사는 건설업 상호시장 진출 허용하지 않는 공사로 입찰공고문, 관련법령, 고시 등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3항 및 같은 법 규칙 제13조의4에 따라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이를 시공 중 유지**해야 합니다.
- 원칙적으로 하도급이 제한되어 **해당 공사를 직접 시공**해야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13조의4제1항제2호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기술능력 및 시설·장비를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라. 조달청 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제1항제8호 또는 제9호에 의거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당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마. 본 입찰은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계약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가 불가하오니 입찰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가.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나.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될 경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평가결과에 따라 B등급(70점) 이상 득점한 업체를 선정하며 평가는 발주처에서 담당합니다.**
- **안전관리계획서 및 사업장 산업재해율 조회 결과(최근3년간) 제출 필수【붙임】참조**
  (산업재해율 조회 결과서 발급처: https://certi.kosha.or.kr/Minwon/Login/form)
- **제출처 및 평가자 : 송도도시기반 백다은(032-456-2833), bed8676@insiseol.or.kr**
- **붙임 「적격 계약상대자 선정 평가표 및 평가기준」 참조**

다.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참가 등록 및 입찰관련 서류

가.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를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입찰서 제출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해야 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입찰서 제출자의 전산장비 및 네트워크상의 문제 등 준비 부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라. 본 입찰에 참가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는 계약시 대표자가 기명날인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현장설명은 하지 않으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하여 설계도서 등 열람은 입찰공고일로부터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인천시설공단 송도도시기반사업단(백다은 032-456-2833)에 열람할 수 있으며, 설계도서 등 열람하지 않고 발생되는 문제는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6. 공동계약: 해당없음

7.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규정에 의하여 면제하며 입찰금액의 1000분의 5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대신합니다.

나. 낙찰자는 낙찰통지(유선포함)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입찰보증금은 우리 공단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8.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사입찰유의서 규정에 의합니다.

9. 낙찰자의 결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추첨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의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예정가격 대비 89.745%이상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제30조제5항 및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이상 일때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10. 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가. 계약상대자는 내역서 작성 시 기초금액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나. 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하며 일반관리비 및 이윤 포함하여 정산합니다. 입찰금액 산정시에는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보험료 등의 미사용으로 인한 사후 정산 시 사용내역 확인(사업장 신고확인서 및 보험료 납부확인서를 첨부)후 청구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44호, 2025. 11. 24. 시행)**에 따라 입찰참가자는 본 공고의 **A값(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확인**하여 **투찰 시 신중히 검토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국민건강 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퇴직공제 부금비	안전 관리비	품질 관리비	합계(A값)
128,616	16,900	169,938	749,594	-	-	-	1,065,048

※ 본 공사의 **A값은 1,065,048원**입니다.

11.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 등에 따릅니다.

나.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자, 발주자의 승인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낙찰자가 계약 후 하도급 계약 시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규정한 표준 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하며, 하도급계약 체결 시, 하도급업체와 협의하여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를 제출하거나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건설공사대장 통보(「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

가. **도급금액이 1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는 법 제2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건설산업종합정보망(www.kiscon.net)을 이용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나. 위(가항)사항을 적용받는 건설업자로부터 4천만원 이상의 건설공사를 하도급받은 건설업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다. 위(가항, 나항)사항에 따른 건설업자는 통보한 사항에 변경이 발생하거나 새로이 기재하여야 할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13. 계약이행서약서 등 제출

가. 본 입찰(견적서 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견적서 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계약이행서약서(청렴계약이행, 적정임금 지급, 인권존중의무 이행)"**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적격심사시 **"조세포탈 유무 확인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조세포탈 등의 사실이 확인될 경우 무효로 처리하거나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합니다.

14.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본 공사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대상**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3장 제9절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하고(노무비 지급용 전용통장 개설) 근로자 개인계좌로 노무비를 입금(**구분관리제**)하여야 하며, 사업부서는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여부를 확인합니다.(**지급확인제**)

15. 지역업체 참여율 확대(권장사항)

인천 지역업체 보호를 위하여 하도급 계약 시 인천광역시 소재 업체와 **하도급 계약 비율 70% 이상을 권장**하며, 공사현장에 필요한 각종 장비, 자재, 건설근로자에 대하여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인천광역시 지역 내 장비, 자재, 인천지역근로자를 70%이상 사용·고용**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16.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관련사항

가. 건설기계임대 시,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 및 **대여대금 직접 지급에 합의**하거나 **건설기계대여지급보증서를 발급**해야 하며, 발주처에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대차하는 모든 공사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의해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표준계약서를 반드시 작성 하여야하며,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따라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http:www.ftc.go.kr 홈>정보공개>표준약관양식> 건설기계임대차 표준약관서

17. 전자대금시스템 사용(상생결제 시스템)

가. 본 공사는 **「상생협력법」제22조에 따라 상생결제시스템 이용 대상 사업**입니다. 상생결제 시스템을 이용을 위해, 계약 체결 전 우리 공단 협약은행과 사전약정 및 상생결제 업무사이트(MP사이트) 가입이 필수이며, 이용약정은 향후 우리 공단에서 안내하는 **'상생결제 이용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협약은행 : 신한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 현재 신한은행과는 펌(Firm)뱅킹이 가능하며 하나, 국민, 농협은행은 연동 진행중임

나. 우리 공단과 상생결제시스템으로 대금지급을 받은 기업(하위기업 포함)은 상생매출채권을 담보로 대출은 불가능하나, 현금기반 상생결제를 통해 하위 협력기업에 상생매출채권을 재발행하고 환출이자 등의 인센티브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다. 이와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상생결제제도 홈페이지- 알림마당 - 자료실- [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 거래기업(1차이하 협력기업) / 현금기반 상생결제'를 참고하시거나 1670-083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8.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 전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공사계약 일반조건 등),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조달청)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과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관련 법령, 시방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애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시고, 장애발생에도 불구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계약 시 **2%에 해당하는 인천광역시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라. 기타 문의사항

○ 입찰공고 및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 재무정보실 이정환(☎032-456-2042)

○ 공사에 관한 사항 : 송오도시기반사업단 백다은(☎032-456-2833)

○ 전자입찰이용안내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콜센터(☎1588-0800)

○ 입찰공고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및 우리공단 홈페이지(http://www.insiseol.or.kr)에 게재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11.

인천시설공단재무관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전면 확대 시행 안내

제도 소개

2024년 모든 퇴직공제 가입사업장 확대 적용

▸ 퇴직공제제도란?

- 건설업 특성 상 여러 현장의 잦은 이동으로 법정퇴직금을 받기 어려운 **건설근로자를 위한 제도**로서, 근로자가 퇴직공제 가입 사업장에서 근로한 내역을 합산하여 향후 건설업에서 **완전히 퇴직(또는 사망)할 때 '퇴직공제금'을 지급**하는 제도

▸ 전자카드제란?

- **퇴직공제금 적립**을 위해 건설근로자가 건설현장에 출입할 때 카드단말기에 **전자카드를 태그하여 본인의 근로내역을 직접 기록하는 제도**로서, **체계적인 인력관리**와 **노무비 허위청구 및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

※ '20.11.27.부터 단계별 확대 적용

▸ 발주기관의 역할

1 퇴직공제부금비 원가 적정 반영 (직접노무비*2.3%)

➲ 건설근로자법 제10조의3(소요 비용의 원가계산)

2 공제부금, 단말기 설치·운영비 정산

➲ 시행령 제10조의2(퇴직공제 가입에 드는 금액)

전자카드제도

2024년부터 달라지는 내용

구분	기존	변경 ('24.1.1. 시행)
적용 현장	• 50억 이상 공공공사 • 100억 이상 민간공사 ※ 입찰공고일 기준 공사 예정금액, 입찰공고가 없는 경우 계약일 기준	• 1억 이상 공공공사 • 50억 이상 민간공사 ※ '24년 신규 입찰공고하는 공사부터 적용되며, 기존 공사에 소급 적용되지 않음
출퇴근 방식	전자카드 지문 (임시사용)	전자카드 지문 (임시사용) 추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3억 미만 공사 등
전자카드 재출시	하나은행 / 우체국 ※ 기존 카드 사용 가능	 「건설올패스」 카드 명칭 변경 및 디자인 통일

고용노동부 건설근로자공제회